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18호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휴대식소화기의 수압시험 대상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스프링클러장치 및 로로구역의 화재탐지장치 설치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휴대식소화기 수압시험(10년) 적용대상을 국제항해선박에서 국내항해 선박으로 확대 (안 제29조의2 개정)
- 나.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에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7조제1항 개정)
- 다. 자동스프링클러 및 화재탐지장치의 면제가 가능한 화재의 위험이 없는 구역 등을 특정구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협약(FSS)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7조제14항)
- 라. 비가연성 물질만 취급하는 국내항해선박의 로로구역 화재탐지장치 면제조건 완화 (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 마. 수동스프링클러헤드 설치방법 중 헤드 상호간 4m이하 거리제한 삭제

(안 별표 7 개정)

바. 일본어 표기인 “폭로”를 국어식 표기인 “노출”로 변경(안 제42조제1항 제2호, 제52조제1항제5호가목 내지 다목, 제57조제7항, 제63조제2호, 제86조제1항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전단 중 “제1종선 및 제 3종선”을 “선박”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를 “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일 것(노출 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노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하여 노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제52조제1항제5호나목 단서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52조제1항제5호다목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57조제7항 단서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57조제14항 중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가연성재료”를 “가연성재료”로 하고,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한다)에는”을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한다) 등을 포함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역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2호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항해중 항시 연속적인”을 “연속적인”으로 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항해중 항시 연속적인”을 “연속적인”으로 하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 중 “폭로”를 “노출”로 한다.

별표 7 제1호 라목 (2) 중 “zzzzz100리터”를 “100리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나목을 삭제하며, 다목과 라목을 각각 나목과 다목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대식소화기 등 수압시험 적용례) 제29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의2(휴대식소화기 등 수압 시험) <u>제1종선 및 제3종선에</u> 비치된 고정식소화장치 이외의 소화기는 용기제조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전체 용기에 대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척용소화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9조의2(휴대식소화기 등 수압 시험) <u>선박</u>----- ----- ----- ----- ----- ----- -----.</p>
<p>제42조(소화전) ① (생 략) 1. (생 략)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제1종선 또는 제2종선의 <u>폭로갑판</u>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생 략) ② (생 략)</p>	<p>제42조(소화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노출</u>-----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47조(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①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폐위된 차량구역 또는 폐위된 로로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제2종선으로서 <u>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u></p>	<p>제47조(차량구역 또는 로로구역의 소방설비) ① ----- ----- ----- ----- ----- ----- ----- ----- ----- -----<u>고정식고팽창포말소화</u></p>

장치,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또는 수동스프링클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52조(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① (생략)

1.~4. (생략)

5. 탄산가스를 소화제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스저장용기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가. 가스를 방출하는 장소외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충돌격벽의 전방을 제외한다)이어야 하며 폭로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폭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하여 폭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나. 적절한 자연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그 구획실 입구가 위벽에 설치되어 직접 개방갑판을 통하지 않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통하여 갑판

장치, 고정식가압수분무소화장치,-----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고정식가스소화장치등의 비치방법)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

가. -----

-----  
--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장소일 것(노출갑판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노출갑판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사다리에 의하여 노출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할 것)

나. -----

아래에 위치한 해당 구획실로 출입하는 경우 또는 저장용기 격납장소의 출입구가 폭로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시 적어도 6회 이상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통풍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 폭로감판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가질 것. 다만, 소화제가 누설되어도 질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 (생략)

6.~12. (생략)

② ~ ④ (생략)

제57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 ⑥ (생략)

⑦ 제1종선 및 제2종선의 차량구역,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로감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⑬ (생략)

⑭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가연성재료가 없는 공소, 개인 욕실, 공공 화장실, 소화기 약제보관창고, 소제기구용

-----  
-----  
----- 노출 -----  
-----  
-----  
-----  
-----

다. 노출-----  
-----  
-----  
-----  
-----

라.~ 사. (현행과 같음)

6.~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노출-----  
-----

⑧ ~ ⑬ (현행과 같음)

⑭ 가연성재료-----  
-----  
-----  
-----

로커(가연성 액체가 보관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개방 갑판 및 폐워된 유보갑판(영구적인 개구를 통해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한다)에는 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⑮ (생략)

제63조(소화전) (생략)

1. (생략)
2. 갑판화물을 적재하는 선박의 폭로갑판에 비치하는 소화전은 항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을 것

3. (생략)

제73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 ③ (생략)

④ 총톤수 500톤 이상의 제3종 선등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항해중 항시 연속적인 화재 당직에 의하여 효과적인 화재 감시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4종선(근해구역이상을 항

-----  
-----  
-----자연통풍  
되는 것에 한한다) 등을 포함하여 화재의 위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구역에는 -----  
-----.

⑮ (현행과 같음)

제63조(소화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노출-----  
-----

3. (현행과 같음)

제73조(자동스프링클러장치 및 화재탐지장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연속적인-----  
-----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운송하고 국내 항해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⑤



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제외한다)에는 차량구역 및 로로구역(항해중 항시 연속적인 화재당직에 의하여 효과적인 화재감시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 ⑨ (생략)

제86조(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소방설비) ① (생략)

- 1. (생략)
- 2. 폭로갑판상의 탱크(가압액화 방식에 의한 인화성고압가스를 적재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을 냉각하기 위한 살수장치

3. ~ 4. (생략)

② (생략)

[별표 7]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제19조의2 관련)

- 1. (생략)
  - 가. ~ 다. (생략)
  - 라. (생략)
    - (1) (생략)
    - (2) 압력탱크의 용량은 1분이

----- (연속적

인-----

----- 경우

또는 비가연성 물질만을 적재

· 운송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6조(인화성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유탱커의 소방설비)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노출-----

-----

-----

-----

3.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7]

수동스프링클러장치의 기준(제19조의2 관련)

- 1. (현행과 같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

내에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정격으로 작동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서 적어도 zzzzz100리터이상일 것

(3) ~ (5) (생략)

마. ~ 자. (생략)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방법

가.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에 의하여 보호되는 바닥면적은 16 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4미터이하일 것

다. 보호되는 구역의 어느 부분도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수평 거리가 2.8미터이하일 것

라. 가연성물건에 대하여 충분히 분사시킬 수 있고 가능한 높은 위치에 취부되어 있을 것. 이 경우 갑판보 그 밖의 구조물에 의하여 분사효과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  
-----  
-----

100리터-----

(3) ~ (5) (현행과 같음)

마. ~ 자. (현행과 같음)

2. -----

가. -----  
-----  
-----

나. (삭제)

나. -----  
-----  
-----

다. -----  
-----  
-----  
-----  
-----  
-----  
-----  
-----  
-----